2027 지역전시 유통지원
<유형2 중대형 전시 유통지원> 공모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중대형 우수 전시콘텐츠의 유통 확산 및 지역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**<유형2 중대형 전시 유통지원>** 공모를 추진합니다.
동 사업에 참여할 전시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□ 공모개요

○ **(공 모 명)** 2027 지역전시 유통지원 <유형2. 중대형 전시 유통지원>

○ **(공모기간)** 사전공고 2026. 11. 23.(월) ~ 12. 31.(목)
신청접수 2027. 1. 4.(월) ~ 1. 22.(금), 14:00까지

○ **(지원대상)**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전시단체·기획사

○ **(지원규모)** 총 20억원 / 4~6건 내외(자부담 10%)
※ 동일 전시콘텐츠를 1개 지역 전시개최 시 3억원, 2개 지역 개최 시 5억원 정액 지원

○ **(지원내용)** 전시 기획·설치·운영 등 전시개최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

○ **(지원사업기간)** 2027. 4. 1.(목) ~ 2027. 11. 30.(화) / 8개월

○ **(추진일정)** ※ 추진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6. 11~12월	▶	27. 1월	▶	27. 2월	▶	27. 4~11월
공모 사전 공고		신청 접수		심의 및 선정		보조사업 운영

▼

27. 4~5월	◀	27. 7~8월	◀	27. 11~12월
1차 교부(50%)		중간정산/2차 교부(50%) ※ 자부담 100% 소진 필수		보조사업 정산 및 실적 보고

○ **(전년대비 변경사항)**

변경항목	2026년	2027년
지원규모	- 1개 지역만 가능, 건당 3~5억원	- 1~2개 지역 가능(1개 콘텐츠의 지역순회) - 1개 지역 3억원, 2개 지역 5억원 정액 지원
공간면적	- 실내 전시전용면적 250평(826㎡) 이상	- 실내 전시전용면적 200평(661㎡) 이상
부대 프로그램	- 전시해설 도슨트(대면 기준) 20회 이상	- 전시연계(도슨트, 체험 등) 부대프로그램 2종 이상 개최
우대사항	- 공공에서 운영하는 전시공간에서 개최	- 공공에서 운영하는 전시공간에서 개최 - 문화취약지역(도서산간 등) 어린이 대상 무료 전시 관람 기회 제공

□ 공모내용

○ (지원자격)

지원대상	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전시단체·기획사 - e나라도움을 통한 국고보조금 지출·정산·회계검증이 가능한 단체(예치형 필수)
지원 제외대상	- 지역 전시 유통 사업 내 타 공모사업과 중복 선정된 경우 - 동 사업으로 정부, 지자체 및 타 기관의 지원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 -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(단,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) - 지방자치단체/ 갤러리/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기업(단체) - 학교(초, 중, 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 -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,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-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-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 - 기획재정부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 2 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 - 문화체육관광부「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」제7조 제4항(보조사업자 선정 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 -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제13조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-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,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-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-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-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-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에 따라 법인·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-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서 정산 잔액,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, 환수금 등 반납을 통보받은 금액을 체납한 자

○ (필수조건)

※ 지원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, 증빙서류 미제출시 조건 불충족으로 간주

1. 지원전시 필수조건

	조건	증빙서류
전시	최근 3년 이내(2024. 1. ~ 2026. 12.)	
	① 개최 이력이 있는 전시	- 전시명 및 개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홍보물, 관련 링크 등 ※ 아트페어/장터형 전시, 레플리카 전시는 지원 불가
	② 신청주체(단체)가 주최 또는 기획한 전시	- 신청주체(단체)명이 주최 또는 기획으로 명시된 홍보물 및 관련 링크 등
	③ 유료로 운영된 전시	- 전시 입장료를 유료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전시기간, 판매내역, 홍보물, 관련 링크 등)
	④ 단일 개최 전시 기준 유료 관람객 수 5,000명 이상인 전시	- 티켓 정산내역, 발권시스템 집계자료 등 ※ 무료 초대 관람객은 실적에서 제외 ※ 동일 전시 순회 시 1개 개최지 실적만 인정(합산 불가) ※ 증빙자료에는 발급기관의 직인 필수 ※ 자체 작성한 보고서, 보도자료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음

2. 사업수행 필수조건

	조건	증빙서류
전시유지	① 기개최 전시의 참여작가 및 참여작품 각각 70% 이상 동일하게 유지 ※ 개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시 구성을 위해 참여작가 및 작품 추가 가능	- 기개최 참여작가 및 참여작품 리스트 - 신청전시 참여작가 및 참여작품 리스트
개최지역	② 서울 외 지역에서 개최 ※ 기개최 지역과 동일 시·군에서 재개최 불가 ※ 2개 지역에서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, 각 전시는 서로 다른 도에서 개최해야 함	- 개최할 전시공간 주소, 관련 링크 등 기재 (예시) N / 기개최 / 신규(공간1) / 신규(공간2) / 가능여부 1 / 경기도 용인시 / 경기도 수원시 /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/ 가능 2 / 경기도 용인시 / 경기도 용인시 / 경기도 수원시 / 불가
전시공간	③ 실내 전시전용면적 200평(661㎡) 이상	- 공간도면, 평면도 등 면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※ 야외 및 전시 외 용도 공간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
	④ 전시를 주된 용도로 하는 공간	- 시설 소개자료, 대관안내서 등 ※ 전시를 주된 용도로 운영하지 않는 카페/식당 등 상업시설(갤러리 포함) 지원불가

필수 이행사항	**(예산편성)** - 국고보조금은 1개 지역 전시개최 시 3억원, 2개 지역 개최 시 5억원으로 정액편성 - 국고보조금의 10% 이상 현금성 자부담 편성 필수 **(전시운영)** * 2개 지역에서 개최시 필수요건은 지역별로 충족하여야 함 - 2027. 4. 1. ~ 2027. 10. 31. 내 유료 전시 개최 ※ 수익금은 별도로 관리하며 활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사업에 환류할 수 있음 - 설치·철수·휴관일 제외 실제 전시 운영일 연속 50일 이상 개최 - 사업 종료 시까지 기개최 전시의 참여작가 및 참여작품을 각각 70% 이상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함 **(부대프로그램·성과관리)** * 2개 지역에서 개최시 필수요건은 지역별로 충족하여야 함 - 전시 연계 부대행사(전시해설, 강연, 체험워크숍 등) 2종 이상 개최 ※ 부대행사는 유료로 운영 가능, 오프닝 및 공연은 부대행사로 인정하지 않음 - 관람객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유효 응답 300부 이상 제출

3. 사업 운영 유의사항 (※ 선정 후 이행)

(사업 운영 및 이행사항)

- 공모 지원시 전시공간과 실제 전시공간이 상이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- 기개최 전시의 참여작가 및 참여작품을 각각 70% 이상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함
  ※ 사업 수행 중 참여작가 및 참여작품 변경 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변경으로 인해 유지율이 70% 미만이 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  ※ 개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시 구성을 위해 참여작가 및 작품 추가 가능
-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오리엔테이션, 성과공유회 등 필수 참석
- 전시기간 중 사업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
- 지원사업 관련 홍보물 일체에 후원 표기(문화체육관광부, 예술경영지원센터 순)
- 언론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 협조
- 시각예술시장조사(*(구)미술시장실태조사) 설문 응답 필수

(사업비 집행 및 정산)

- 총사업비는 사업기간 내 집행하여야 하며, 사업기간 이전 및 이후 집행은 불인정함
- 국고보조금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으며, 사업기간 동안 보조금 및 수익금 통장 해지 금지
- 사업비 통장은 타 사업 및 개인 지출건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
- 자부담은 1차 지급분 중간정산 시 전액 소진 및 회계검증 완료를 원칙으로 함
- 자부담을 타당한 사유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 사업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
-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, 집행, 변경, 정산, 실적보고,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
- 총사업비는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검증보고서 제출 필수

- 보조사업자의 임직원(직계존비속 포함)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불가

(필수교육 및 법령 준수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의무교육 수료 및 서약서 제출
- e나라도움 회계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
-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자(프리랜서 등 포함) 부정수급 방지 교육 이행필수
- 사업 운영 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및 보조금법, 예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중 지침 개정 시 개정 규정 적용
-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원단체에 있음
- 저작권·특허권·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·성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체의 민·형사상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, 문제 발생 시 사업 제외될 수 있음
-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 시 '예술인복지법'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, '예술인권리보장법'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하거나, '예술인권리보장법'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, 해당 단체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참여작가와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체결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신고 필수
- 참여 예술인 대상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권장
- 수의계약은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및 동법 시행령에따라 계약 허용 요건과 금액 범위 내에서 체결

(기타 유의사항)
- 공모/교부 신청내용과 실제 운영내용이 상이하거나 허위일 경우 사업 취소 및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
- 제출서류는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
- 지원기간 동안 사업체는 유지해야하며, 기간 내 휴·폐업 시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○ (우대사항)

우대사항	- 개최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시 재구성 - 공공에서 운영하는 전시공간에서 개최할 경우 - 문화취약지역(도서·산간 등) 어린이 대상 무료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할 경우 - 기업의 후원, 협찬 등을 협력할 경우

○ (사업비 편성내용)

※ 사업비(국고보조금+자부담10%)는 공급가액으로만 편성 가능하며,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지출 필수
※ 사업비 편성시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거나 과대한 편성일 경우 심의시 축소·조정될 수 있음
※ 사업비 지원가능 항목의 유의사항 위반 및 지원불가항목 편성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

목	세목	세부항목
인건비 (110)	일용임금 (04)	• 전시장 지킴이 사례비
운영비 (210)	일반수용비 (01)	• 총괄기획자 사례비 ※ 국고보조금의 10% 이내 책정 ※ 신청주체의 대표자(공동대표 포함) 또는 외부 기획자 중 총 1인에 한하여 편성 가능
		• 참여작가 사례비(Artist's fee)
		• 전문가 활용비 - 강의료, 학술행사 사례비, 원고 및 편집사례비, 통·번역료
		• 재료비 - 부대행사 진행 시 재료비
	공공요금및 제세(02)	• 보험료 - 전시장, 작품 등에 대한 보험료
	임차료 (07)	• 전시공간 대관료 • 임차료 - 전시에 필요한 물품, 장비 등에 대한 임차료
	일반용역비 (14)	• 공간연출(설치/철수) 대행용역비
		• 작품운송(반입/반출) 대행용역비
		• 전시장지킴이 인력대행 용역비
		• 전시 홍보, 광고 등 대행용역비
		• 기타 전시운영에 필요한 대행용역비 -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사전 승인 시 지출 가능

※ 세부 편성 기준은 지원신청서 참고 필수

편성 불가능항목	• 소속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구입비, 공과금 • 지원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성 물품 구입 및 제작비 등 • 시스템(홈페이지 등) 관련 개설·개발·운영·유지·보수비 • 전시공간 유지·보수비, 전기세, 수도세 등 • 여비, 교통비, 숙박비, 유류대 • 전시연계 프로그램 개발비, 자문비, 회의비 • 전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용, 보조금카드 사용제한 업종 등

□ 공모접수

○ **(신청기간)** 2027. 1. 4.(월) ~ 1. 22.(금), 14:00까지

○ **(공모방식)**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한 접수

○ **(제출서류)**

구분	제출여부	제출서류	형식	제출방법
서류	필수	-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	-	e나라도움 작성
		- 지원신청서 및 붙임서류 [붙임1] 공모지원신청서 [붙임2] 필수조건 증빙서	HWP	e나라도움 첨부
		[붙임3] 참여작가 및 작품 리스트	EXCEL	
		[붙임4]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 [붙임5] 성희롱 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[붙임6]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 [붙임7]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[붙임8]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및 확약서	HWP	
		-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	JPG /PDF	
	선택	- 공간 협약서(제출 시 전시공간 날인 필수) - 후원/협력 증빙서(후원/협력 기관의 날인 필수)	PDF	
면접	필수	- 발표자료 ※ 서류심의 결과공고 후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안내 예정		

※ 제출 완료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 이후 수정은 불가함

※ 제출서류 누락, 기입 미비, 날인 누락, 서류 양식 임의 변경 등의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공모심의

○ **(심의일정)** 2027년 2월 1~3주(예정)

27. 1월 5주	▶	27. 2월 1주	▶	27. 2월 3주	▶	27. 2월 3주
행정결격 검토		(1차) 서류심의		(2차) 면접심의		최종결과공고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**(심의방법)** 외부 전문가 7인에 의한 서류/면접 심의 진행

- (1차) 서류심의
- (2차) 면접심의 : 공모신청서에 기재된 총괄기획자 1인 PT

※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총괄기획자 변경 및 대리 PT, 면접 일정 변경 불가, 총괄기획자는 반드시 대면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미참여 시 포기로 간주

※ 지원신청 접수 현황에 따라 서류심의와 면접심의는 동일 일자에 실시할 수 있음

○ **(심의기준)**

연번	항목	세부내용	배점
1	사업계획의 구체성·타당성	- 개최 전시의 우수성 및 경쟁력 - 지역 특화 전시 재구성 및 지역 공공기관·기업 등과의 협력 -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- 예산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	30
2	관객 확보 및 전시환경의 적정성	- 전시공간의 적정성 및 접근성 - 홍보·마케팅 및 관객 모객 계획의 현실성 - 안전·관람환경 조성 계획 - 문화취약지역 어린이 대상 무료 관람 기회 제공 계획	30
3	신청주체 역량	- 총괄기획자 및 신청주체의 전문성 -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수행 역량	20
4	목표 달성 및 기대효과	- 성과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- 지역 문화 향유 효과 - 사업성과의 지속가능성 및 후속사업 연계가능성	20
합계			**100**

□ 문의처

○ **(사업관련)** 02-2098-2910

※ 문의시간 : 평일(월~금) 9:00~16:00 /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

○ **(e나라도움)** 이용문의 1670-9595